

##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이 자료는 지난 6월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 공청회”에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지난 87년 12월에 제정·공포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의 조직, 명칭, 용어 등을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이용·보급사업도 포함하는 포괄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주제발표를 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오 박사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정부주도의 대체에너지 이용 시대의 개막,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대한 실천계획 근거법 마련, 기개발된 기술의 시범보급 및 실용화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대체에너지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의 법률명을 대체  
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청정에너지의 활용 증대로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액화, 가스화
7. 해양에너지

## 8. 폐기물에너지

##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제 3 조(시책과 장려)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 공공단체·기업체 및 이용자의 자발적인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 4 조(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획의 목표 및 기간

### 2.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목표

### 3. 계획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 4. 대체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 5. 기타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및 에너지수급동향의 변화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연차실행계획)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기술의 종류별로 매년도 대체에

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기술개발계획의 사전 협의) ①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을 수립·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5조의 실행계획을 수립·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 조(대체에너지 정책심의회) ①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대체에너지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

발 및 이용·보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대체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통계 작성 및 정책기획
2.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
3. 대체에너지의 기술평가 및 사후관리
4. 대체에너지의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대체에너지관련 기술지도 및 교육, 홍보
6. 대체에너지 이용·보급 및 시범사업
7. 대체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8. 기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의 실시)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와 협약을 맺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개발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
2. 기업의 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 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 연구기관
6. 개인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체에너지 사업·이용 등의 권고)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 각호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 공공단체와 그 소속업무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체에너지를 지정하여 이용 또는 이용설비를 설치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유 시설 등의 사용)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

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의 연구시설 또는 토지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3 조(시범사업)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 14 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법 제11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또는 명령을 받았거나, 기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재정·금융 및 행정상의 조치 등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5 조(대체에너지 교육, 홍보 등) 정부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6 조(대체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연차별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7 조(권한의 위임) 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벌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이용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9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 제3항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8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20 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준용)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